

의안번호	2213313
의 퇴 인	김장겸의원
회 답 일	2025. 12. 29.
추 계 번호	25B5399

이동통신보안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요이동통신장비의 인증을 실시하고, 이동통신보안지침·주요이동통신보안지침 및 침해사고 보상지침을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1억 1,000만원(연평균 12억 2,2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 실시(안 제5조)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1,200
이동통신보안지침 및 주요이동통신보안지침 마련 (안 제7조 및 안 제14조)	60	—	—	—	—	60	12
침해사고 보상지침 마련 (안 제36조)	50	—	—	—	—	50	10
합 계	1,310	1,200	1,200	1,200	1,200	6,110	1,222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인증제도 운영,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주요이동통신장비의 인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보안을 강화하고 이동통신 품질을 혁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장비(이하 “주요이동통신장비”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인증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함(제1항)	재량·의무 규정
2	안 제7조(이동통신보안 확보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보안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이동통신보안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3	안 제8조(위험 식별)	이동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위험식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침해사고 발생 가능성 등 이동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위험을 분석·평가(이하 “위험식별검사”라 한다)하여야 함(제1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분석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식별검사에 관한 기준(이하 “위험식별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4	안 제10조(이동통신보안계획 이행 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보안에 대한 위험 증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동통신보안계획의 이행 여부를 검사(이하 “이동통신보안계획 이행 검사”라 한다)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5	안 제11조(다층보안체계의 구축·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다층보안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2조(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의 지정)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식별검사와 이동통신보안계획 수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위험식별검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함(제4항)	의무규정
		국가는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의 보안 기술 수준 함양을 위하여 교육사업 등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7	안 제14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보안 확보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이동통신보안에 대한 위험요소, 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위험식별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보안지침(이하 “주요이동통신보안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8	안 제15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인증장비 사용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인증장비 사용 여부나 사용 중인 인증장비가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보안 위험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주요이동통신장비의 교체·점검 및 특정 주요이동통신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령할 수 있음.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9	안 제16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위험 식별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보안 위험, 이동통신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위험식별기준을 마련하여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0	안 제17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위험 감소 및 대비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이동통신보안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정권고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1	안 제18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보안계획 이행 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이동통신보안계획 이행 검사를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2	안 제23조(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인 및 피해규모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범정부 차원에서 조사단(이하 “침해사고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분석 및 이동통신보안계획 반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27조(보안조사의 시행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안조치·이용자보호조치의 적절성 및 적법성과 침해사고의 원인과 피해 현황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안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4	안 제28조(보안조사단의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조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보안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함(제1항) 보안조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2인을 포함하여야 하며, 부단장 중 1인은 이동통신보안과 이동통신서비스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민간 전문가로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5	안 제36조(침해사고 보상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보상에 관한 지침(이하 “보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음	재량규정
16	안 제3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침해사고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됨(제3항) 1.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이동통신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함(제4항)	의무규정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음.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봄(제6항)	재량·의무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주요이동통신장비의 인증 등)	○	•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7조(이동통신보안 확보 등)	○	•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
	안 제14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보안 확보 의무)		
3	안 제8조(위험 식별)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및 주요이동통신사업자가 위험식별검사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험식별검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경우 검사제도 운영 및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검사의 항목 및 방법, 검사제도 운영을 위한 국가의 지원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안 제16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위험 식별 의무)		
4	안 제10조(이동통신보안계획 이행 검사)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 및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동통신보안계획 이행 검사를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검사 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안 제18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보안계획 이행 검사)		
5	안 제11조(다층보안체계의 구축·운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중요도에 따라 정보와 시스템을 분류하여 차등적으로 보안을 적용하는 다층보안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다층보안체계의 구축 및 운영 방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6	안 제12조(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의 지정)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가 위험식별검사와 이동통신보안계획 수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위험식별검사기관에게 위탁하고, 국가가 해당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의 보안 기술 수준 함양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의 수, 위험식별검사 및 이동통신보안계획의 세부 내용 및 실시·수립 방법,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의 보안 기술 수준 함양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7	안 제15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인증장비 사용의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인증장비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 시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주요이동통신장비의 교체·점검 및 특정 주요이동통신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인증장비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의 주기 및 항목·방법, 주요이동통신장비의 교체·점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8	안 제17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위험 감소 및 대비 의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요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이동통신보안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9	안 제23조(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은 중대한 침해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침해사고를 대상으로 하여 침해사고 원인 및 피해규모 분석 등을 위해 필요시 침해사고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 비해 조사단 구성 횟수가 증가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향후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조사단 구성 횟수를 예측하기 어렵고, 조사 방법, 민간위원 구성 수 및 민간위원 지급 수당의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의 규모 및 민간위원의 수는 그 침해사고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결정되고,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위원별 조사단 회의 참여 및 자료제출 횟수 등에 따라 상이하 [최근 3년간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현황]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2023년</th><th colspan="2">2025년</th></tr> <tr> <td>구성 횟수</td><td>1회</td><td colspan="2">2회</td></tr> <tr> <td>활동 기간</td><td>'23.1.18.~5.31.</td><td>'25.4.23.~7.4.</td><td>'25.9.9.~</td></tr> <tr> <td>조사 대상</td><td>(주)엘지 유플러스</td><td>(주)SK텔레콤</td><td>(주)케이티</td></tr> <tr> <td>조사단 구성</td><td>12명 •(공무원 등) 과기부 3명, KISA 5명 •(민간위원) 4명</td><td>23명 •(공무원 등) 과기부 6명, KISA 11명 •(민간위원) 6명</td><td>30명 •(공무원 등) 과기부 5명, KISA 18명 •(민간위원) 7명</td></tr> <tr> <td>민간위원 지급 수당 등</td><td>총 500만원 (인당 평균 125만원)</td><td>총 1,060만원 (인당 평균 177만원)</td><td>조사 진행 중</td></tr> </table> 주: 2024년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내역 없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2023년	2025년		구성 횟수	1회	2회		활동 기간	'23.1.18.~5.31.	'25.4.23.~7.4.	'25.9.9.~	조사 대상	(주)엘지 유플러스	(주)SK텔레콤	(주)케이티	조사단 구성	12명 •(공무원 등) 과기부 3명, KISA 5명 •(민간위원) 4명	23명 •(공무원 등) 과기부 6명, KISA 11명 •(민간위원) 6명	30명 •(공무원 등) 과기부 5명, KISA 18명 •(민간위원) 7명	민간위원 지급 수당 등	총 500만원 (인당 평균 125만원)	총 1,060만원 (인당 평균 177만원)	조사 진행 중
구 분	2023년	2025년																									
구성 횟수	1회	2회																									
활동 기간	'23.1.18.~5.31.	'25.4.23.~7.4.	'25.9.9.~																								
조사 대상	(주)엘지 유플러스	(주)SK텔레콤	(주)케이티																								
조사단 구성	12명 •(공무원 등) 과기부 3명, KISA 5명 •(민간위원) 4명	23명 •(공무원 등) 과기부 6명, KISA 11명 •(민간위원) 6명	30명 •(공무원 등) 과기부 5명, KISA 18명 •(민간위원) 7명																								
민간위원 지급 수당 등	총 500만원 (인당 평균 125만원)	총 1,060만원 (인당 평균 177만원)	조사 진행 중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0	안 제27조(보안조사의 시행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안조사단을 구성하여 보안조사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안은 보안조사단의 인원, 구성, 활동 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안조사 사유의 중대성, 보안조사 대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조사의 세부내용 및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안 제28조(보안조사단의 구성)		
11	안 제36조(침해사고 보상지침)	○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
12	안 제3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향후 침해사고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및 이에 따른 분쟁조정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위원회 운영 방식, 민간위원 구성 수 및 민간위원 지급 수당의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 실시(안 제5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장비(이하 “주요이동통신장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사사례(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제도)를 참고하여 추계함
 - － 제정안은 인증의 대상이 되는 주요이동통신장비의 범위와 인증의 기준 및 기준 설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인증 대상,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을 알 수 없으나, 유사 사례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제도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제도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제도와 유사한 규모 및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가정
- 유사사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법¹⁾에 따라 2021년부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IoT) 정보보호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 후 5년(2021~2025년)간 연평균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IoT) 정보보호인증제도는 가전·교통·금융·스마트도시·의료·제조 및 생산·주택·통신 등 8대 분야의 기기·설비·장비(IoT)를 대상으로 데이터보호, 암호, SW보안, 업데이트 등 총 50개 항목에 대해 인증시험을 실시하여, 보안 위험 등급을 3개 등급(라이트, 베이직, 스탠다드)으로 구분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과학기술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정보보호인증제도를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음

[표 2] IoT 보안인증제 운영 및 내재화 확산 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세부 내역	IoT 보안시험인증 지원 595 컨설팅 및 교육 255 시험절차 및 기준 개발 400 인증위원회 운영 50	IoT 보안시험인증 지원 595 컨설팅 및 교육 255 시험절차 및 기준 개발 400 인증위원회 운영 50	IoT 보안시험인증 지원 595 컨설팅 및 교육 255 시험절차 및 기준 개발 400 인증위원회 운영 50	IoT 보안시험인증 지원 595 컨설팅 및 교육 255 시험절차 및 기준 개발 300 인증위원회 운영 50	IoT 보안시험인증 지원 ¹⁾ 595 컨설팅 및 교육 ²⁾ 205 시험절차 및 기준 개발 50 인증위원회 운영 28	-
계	1,300	1,300	1,300	1,200	878	1,200

주: 1)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인증시험 수수료 80% 국가 지원
 2) 정보보호인증 신청인에 대한 기술 등 컨설팅 및 교육 실시
 3) 2026년 8억 3,800만원 편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요이동통신장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0억원(연평균 12억원)으로 추계됨

[표 3]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 실시(안 제5조)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1,200

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인증제도 운영에 따라 추계금액은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기간 동안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이동통신보안지침 및 주요이동통신보안지침 마련(안 제7조 및 안 제14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안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이동통신보안지침”)과 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보안지침(이하 “주요이동통신보안지침”)을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의 평균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함

- －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보안지침 및 주요이동통신보안지침을 각각 마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동통신보안지침 및 주요이동통신보안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단일한 연구용역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보안지침 및 주요이동통신보안지침이 각각 이동통신사업자 및 주요이동통신사업자²⁾에게 적용되는 보안지침으로 각 적용대상에게 요구되는 보안조치의 정도 및 세부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동통신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보안조치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성격은 동일하며, 이동통신사업자 및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구되는 보안조치의 유형도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일한 연구용역을 통해 이동통신보안지침 및 주요이동통신보안지침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임

- － 이동통신보안지침 및 주요이동통신보안지침은 추계 첫해인 2027년에 연구용역을 통하여 마련하고, 이후 지침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지침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정함

- 유사사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 등 기반 디지털의료제품 보안지침 마련 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음

2) 제정안은 주요이동통신사업자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동통신사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매년 경제상황의 변화, 이용자 보호 필요성, 이동통신보안위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표 4] 유사사례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부처	유사사례명	실시년도	용역 내용	소요예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용역	2025	IoT 보안인증 제도 강화를 위한 고시 개정안 마련 등 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70
식품의약품 안전처	AI 등 기반 디지털의료제품 보안지침 마련 연구용역	2024	AI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의료제품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위험 완화 및 보안 통제 대책 수립	50
평 균				6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및 국가중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내용 참조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보안지침 및 주요
이동통신보안지침을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000만원(연평균 1,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이동통신보안지침 및 주요이동통신보안지침 마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이동통신보안지침 및 주요이동통신보안지침 마련 (안 제7조 및 안 제14조)	60	—	—	—	—	60	12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연구용역의 실시 방법 및 비용에 따라 추계금액은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침해사고 보상지침 마련(안 제36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보상지침을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의 평균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함
- 유사사례로, 국토교통부는 ‘항공사고 피해자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를 위한 피해보상 가이드라인 해설서 및 교육자료 마련 용역’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및 피해평가에 관한 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음

[표 6] 유사사례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부처	유사사례명	실시년도	용역 내용	소요예산
국토 교통부	항공사고 피해자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2025	2024.12.29.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 관련 피해자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 개발 등	50
식품의약품 안전처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를 위한 피해보상 가이드라인 해설서 및 교육자료 마련 용역	2025	임상시험 의뢰자가 의약품 임상시험 보상 규약 및 절차 마련 시 참여자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해설서 및 교육자료 마련 등	50
농림축산 식품부	농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및 피해평가에 관한 연구용역	2024	농약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및 수치모델 제시,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농약피해 평가방법 표준안 마련 등	40
평 균				5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및 국가중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내용 참조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보상지침을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000만원(연평균 1,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침해사고 보상지침 마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침해사고 보상지침 마련 (안 제36조)	50	—	—	—	—	50	10

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연구용역의 실시 방법 및 비용에 따라 추계금액은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인증제도 운영,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